

영등포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5.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구애라의원 외 6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8. 5. 15.
- 제 안 자 : 구애라의원(외 6인)

■ 개정(제안) 이유

- 가임기 여성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가임기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대림운동장, 안양천변 체육시설 등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제3조 내지 제3조의 2)
-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시간보다 일찍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정전이나 우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하고, 사용자가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사용시간을 산정함(안제6조)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 1의 비고란에서 이전하여 항을 신설하고,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제9조)
-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함(안제10조)
- 체육시설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제13조)

-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안제16조)
-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안별표 2 내지 별표 3)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소비자기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08년 3월 12일 가임기 여성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가임기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영장사용료를 감면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 **안 제9조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 **안 제3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구민체육 센터를 비롯하여, 대림운동장, 안양천 체육시설 등 우리구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명시하여 구민이 체육시설의 현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 **안 제6조**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인지하여야 할 사용시간의 산정 방법과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안 제10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개정하며,
- **안 제13조**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6조** 기 위탁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운영위탁에 대한 사후조치로,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하며
- **안 별표에**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등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5. 20.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법령

관 련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83호]

제12조 (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 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